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65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김용태·조은희·조지연

유용원 • 주호영 • 김위상

박충권 · 서천호 · 박덕흠

김성원 · 임이자 · 배준영

김재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문예회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·관광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 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, 학령인구 감소, 청년 인구 유출,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.

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, 교육비 부담 경감 등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,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·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·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(안 제2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 제목 중 "교육·문화"를 "문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각급 학교, 문예회관"을 "문예회관"으로, "교육·문화"를 "문화"로 하 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육·문화"를 각각 "문화"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교육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,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고등학교(접경지역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.) 또는 접경지역 대학[접경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접경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술 •학문 연구 진흥을 위하여 교육용 • 연구용 시설 • 설비의 확보 및 실험실습비 • 연구조성비 •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.
- ⑤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접경지역 대학 교원은 지방대학 교원으로 본 다.
- ⑥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<u>교육·문화</u> ·관광시설에	제24조(<u>문화</u> ·관광시설에 대한
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	지원) ①
치단체는 접경지역에 <u>각급 학</u>	<u></u> 문예회관
<u>교,</u> 문예회관·도서관·박물관	
등을 포함한 문화시설, 관광・	
숙박・위락・여객시설 및 체육	
시설(이하 " <u>교육·문화</u> ·관광	
시설"이라 한다)이 적절히 설	
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	
야 한다.	
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	②
<u>교육·문화</u> ·관광시설을 설치	문화
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	
설치된 <u>교육·문화</u> ·관광시설	문화
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	
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·허가	
등을 할 수 있다.	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교육에 대한 지원) ①
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
	역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
	확대,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
	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

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고등학교(접경지역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.) 또는 접경지역 대학[접경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접경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 경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 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술·학문 연구 진흥을 위하여 교육용·연구용 시설·설비의 확보 및 실험실습비·연구조성비·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

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접경지역 대학 교원은 지방대학 교원으로 본다.

6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 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접 경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(졸 업예정자를 포함한다)을 우대 하여 채용할 수 있다.